#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이병진・이연희・박희승

윤준병 · 송옥주 · 권칠승

강유정 • 주철현 • 유후덕

홍기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 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산지 표시) ① 화훼를 수입하는 자,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2(원산지 표시) ① 화훼
	를 수입하는 자, 생산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
	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u>보관·진열하는 자는 소비자의</u>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
	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u>야 한다.</u>